

발신번호 사전등록 신청서

위임사 (발신번호 명의자)	발신번호	010 - 7569 - 9697		
	사업자등록번호		상호	
	사업장 주소			
	담당자명		담당자 연락처	
수임사 (문자발송 대행사)	알리고문자 ID	wangholy		
	사업자등록번호	142 - 88 - 02445	상호	
	사업장 주소			
	담당자명		담당자 연락처	

※ 위임사와 수임사 각 담당자 정보(이름, 연락처)는 발신번호 등록 서류 제출 시, 첨부하는 신분증(+재직증명서)과 일치해야 합니다.

본 발신번호 명의자(이하 '위임사')는 문자발송 대행사(이하 '수임사')와 홍보/광고/공지/안내목적의 문자 발송에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는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 양사간 이의가 없을 시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이에 위임사는 수임사가 위임사의 발신번호 010 - 7569 - 9697 를 홍보/광고/공지/안내 문자 발송 목적으로 알리고 문자 사이트(smartsms.aligo.in)에 발신번호로 등록하여 문자 발송하는 것을 동의하였으며 등록 신청한 발신번호는 위임사 명의의 발신번호임을 증명합니다.

20 년 월 일

발신번호 명의자 (위임사) 상호 : (인)	문자발송 대행사 (수임사) 상호 : (인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법인인감 또는 대표자인감만 가능

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유의사항

- * 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?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.
- * 알리고 문자는 전기통신사업법 "제84조의2"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'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'에 따라 회원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
 -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·협박·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 1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
 2.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
 3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
 4.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·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.
 1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, 차단시각, 발신 사업자명
 2.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
 3.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
 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,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·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 -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·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64조,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.

* 문자발송 대행사는 발신번호 등록 전 해당 번호가 기업 또는 기관 및 그에 속한 임직원이 보유한 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등록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은 모두 문자발송 대행사를 지정한 발신번호 명의자에게 있습니다.